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66 발의연월일: 2025. 5. 21.

발 의 자:백선희·서왕진·김재원

신장식 · 정춘생 · 강경숙

박은정 · 김준형 · 차규근

한창민 · 이해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 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도적 일관성 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및 제52조제5항). 법률 제 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5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4항의 경우 시효를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④ _「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	
(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	
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	
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u><단서 신설></u>	<u>다만, 본문에 규정된 죄를</u>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음에도 급여를 받은 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
	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u>한다.</u>
제52조(시효) ① ~ ④ (생 략)	제52조(시효) ① ~ ④ (현행과

⑤ 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
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	-하
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
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히	시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
멸한다. <단서 신설>	

⑥ ~ ⑧ (생 략)

같음)
⑤
<u>다만, 제38조제4항의</u>
경우 시효를 10년으로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